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1172 호 2019. 5. 2.(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5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6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7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8호[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9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0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6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1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2호[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74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9호[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 7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3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7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4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 8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5호[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8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7호[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8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8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9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0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2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5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7호[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3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0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5호[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6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18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8호[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18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9호[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3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일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 출장할 경우 출장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table>
<tr><td>출장목적</td><td colspan="6"></td></tr>
<tr><td>출장동기
및 내용</td><td colspan="6"></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6">. . . ~ . . .(일간)</td></tr>
<tr><td>출 장 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6">출 장 자</td><td rowspan="2">소속</td><td rowspan="2">직위</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성별</td><td rowspan="2">연령</td><td colspan="2">출 장 경 비</td></tr>
<tr><td>금 액</td><td>부담기관</td></tr>
<tr><td>계</td><td></td><td>명</td><td></td><td></td><td>천원</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장자별 개인보고서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제1조 ~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 (제4조 ~ 제7조)

-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위원수 : 6인 → 7인, 위원장 : 부의장(당연직) → 민간위원 중 호선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출장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등(제8조 ~ 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만 19세가”를 “18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아동의 정의 및 아동의회 관련 일부 조문 정비

-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수정(제2조제1호)
-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제15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수정(제15조제3항)
-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제23조제1항)
-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수정(제24조)
- “만 19세가”를 “18세가”로 수정(제25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2항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제3조제3항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4항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변경(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별표2,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

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

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

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체결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

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

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0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공무원임용령법」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 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고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7항, 제19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14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 고 취 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19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19조제6항 관련)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신설(제4조, 제4조의2~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신설(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제10조의2, 제10조의3)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신설(제15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신설(제3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제외)”를 “매곡동 일원(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제외)“로 하고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을 ”매곡동 392~615, 650~654, 795-1~795-77, 795-102~795-115, 855, 857, 918-1~918-19, 919-1~919-11, 919-13~919-20, 922-1~922-13, 922-15~922-16, 923-1~923-14, 923-17~923-30,

924-1~924-10, 924-11, 924-14, 925-1~925-9, 925-15, 926-1~926-7, 927-1~927-14, 928-1~928-2, 938-1, 938-8, 939-1~939-4, 940, 941, 942 “로 하고,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를 “신천동 88~240, 314~316, 379~381, 382~745, 745-1, 745-31, 745-36~745-38, 745-62~745-48, 745-50~745-53, 745-59·60, 745-62~745-73, 745-112~745-115, 745-117·122·127·129·130, 745-136~745-138, 745-164, 782, 786, 799”로 한다.

별표 2 중 연번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산동 29, 29-1~4, 30, 31-3, 31-5~6, 32, 32-2, 32-4, 33-6, 33-10, 33-15~17, 35, 35-1~2, 36-1~3, 36-5~11, 37, 38-1~20, 39, 40, 41, 42, 43, 43-1~2, 44, 45, 45-4, 45-6~7, 47-1~2, 47-9, 48, 48-1, 49, 49-1, 49-6~7, 50, 50-1~2, 51, 52, 55-1, 56, 1151-11, 1151-29, 1151-35, 1154, 1185-11, 1186-12, 산156-5~6, 산156-9~10, 산156-20, 산156-22~24, 산 156-26, 산156-40~45번지(78,436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별표 1, 2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강좌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휴관 일시와 사유를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일 전월 1일부터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세 자녀이상 가정의 세대원

8.「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9. 만65세 이상 노인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1.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 남은 사용시간의 사용료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강좌 수강전 취소 신청: 전액반환

2. 강좌 수강중 취소 신청: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취소: 남은 사용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기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 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1회, 2시간	10,000원	· 기준시간 초과시 30분당 2,000원 가산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2. 강좌 수강료

기준	수강료	비고
강좌당(1명, 1분기)	30,000원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전화번호	자택	
				H·P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신청사항	시 설 명				
	사용목적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구에 처음 개관하는 생활문화 활동공간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맞게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시설의 위치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다. 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제10조)

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제15조)

마. 자원봉사자, 운영자문 등에 관한 사항(제16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하 “예비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업무 제안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비 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예비 전문매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고일 직전연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차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 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인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한 예비 전문매각기관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영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3. 울산광역시장이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은 선정일 부터 2년 동안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매각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예술품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행의 해제 요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체 없이 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심사 등(제2조 ~ 제3조)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선정취소(제4조 ~ 제5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제6조 ~ 제7조)

라.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재산의 인도(제8조 ~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2018년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기한	2018. 12. 31. 까지	2020. 12. 31. 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보다 더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주청정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주 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또는 홍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 등이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후원 행위나 주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홍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제5조)

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구민의 참여 사항(제6조, 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4. 25.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우수관로 매설, 진출입로 개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당초 - 산하동 932-60번지, 산하동 932-61번지
변경 - 산하동 932-6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당초 - 3㎡
변경 - 일시 19㎡, 영구 15㎡
나. 기 간 - 일시 2019. 05. 01. ~ 2019. 10. 31.
영구 2019. 11. 01. ~ 2023.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기자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 38(신정동)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9 - 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코리아신탁(주) 대표 최익종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붙임1】 참조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명칭	송정 지웰푸르지오 신축공사	송정 지웰푸르지오 신축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	변경없음
사업주체	코리아신탁㈜ 대표 최익종	코리아신탁㈜ 대표 최익종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변경없음
대지면적	27,708.0472㎡	27,708.0472㎡	변경없음
건축면적	3,838.1180㎡	3,838.1180㎡	변경없음
연 면 적	64,785.7525㎡	64,785.7525㎡	변경없음
건폐율/용적률	13.85% / 169.89%	13.85% / 169.89%	변경없음
층수/동수 /세대수	지하1층, 지상16~25층 / 주: 5개동, 부속: 11개동 / 420세대	지하1층, 지상16~25층 / 주: 5개동, 부속: 11개동 / 420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A / 310 / 84.9623 / 25.2040 / 110.1663 B / 110 / 84.9523 / 25.0941 / 110.0664 계 / 420	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A / 310 / 84.9623 / 25.2040 / 110.1663 B / 110 / 84.9523 / 25.0941 / 110.0664 계 / 420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구 분 / 합 계(㎡) 경비실 / 20.0900㎡ 관리사무실 / 255.0435㎡ 조경시설 / 9,870.8800㎡(35.62%) 주차장 / 517대 경로당 / 124.9455㎡ 어린이집 / 186.8659㎡ 주민공동시설 / 563.5678㎡ 주민운동시설(외부) / 313.7400㎡ 어린이놀이터 / 754.1800㎡ 근린생활시설 / 1,402.4858㎡	구 분 / 합 계(㎡) 경비실 / 20.0900㎡ 관리사무실 / 255.0435㎡ 조경시설 / 9,882.81㎡(35.66%) 주차장 / 517대 경로당 / 124.9455㎡ 어린이집 / 186.8659㎡ 주민공동시설 / 563.5678㎡ 주민운동시설(외부) / 530.01㎡ 어린이놀이터 / 754.1800㎡ 근린생활시설 / 1,402.4858㎡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 경 (증11.93㎡)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 경 (증216.27㎡) 변경없음 변경없음
사 업 비	161,063,167천원	161,063,167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7. 06. ~ 2019. 09.	2017. 06. ~ 2019. 09.	변경없음
변경사항	• 소방차로 선형 변경 • 조경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외부) 설치면적 변경(증)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84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9. 4.26.	2019 -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시과장)	어물동 일원	변경 전 1,416 변경 후 1,585	2018. 10. 11. ~ 2047. 10.10	해안산책로 개설	면적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9-85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19. 4. 26.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55,585,042	100.00%	314,081,758	100.00%	41,503,284	13.21%
일반회계	352,008,098	98.99%	311,948,333	99.32%	40,059,765	12.84%
특별회계	3,576,944	1.01%	2,133,425	0.68%	1,443,519	67.66%
기타특별회계	3,576,944	1.01%	2,133,425	0.68%	1,443,519	67.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9,348	0.05%	162,820	0.05%	26,528	16.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5,700	0.02%	53,600	0.02%	2,100	3.92%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37,770	0.24%	7,134	0.00%	830,636	11643.34%
주차장특별회계	2,494,126	0.70%	1,909,871	0.61%	584,255	30.59%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352,008,098	100.00 %	311,948,333	100.00 %	40,059,765	12.84%
100 지방세수입	70,463,000	20.02 %	70,463,000	22.59 %	0	0.00%
110 지방세	70,463,000	20.02 %	70,463,000	22.59 %	0	0.00%
200 세외수입	20,367,564	5.79 %	19,223,655	6.16 %	1,143,909	5.95%
210 경상적세외수입	17,243,784	4.90 %	17,215,573	5.52 %	28,211	0.16%
220 임시적세외수입	3,123,780	0.89 %	2,008,082	0.64 %	1,115,698	55.56%
300 지방교부세	6,702,391	1.90 %	4,800,000	1.54 %	1,902,391	39.63%
310 지방교부세	6,702,391	1.90 %	4,800,000	1.54 %	1,902,391	39.63%
400 조정교부금등	47,129,280	13.39 %	44,737,280	14.34 %	2,392,000	5.35%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7,129,280	13.39 %	44,737,280	14.34 %	2,392,000	5.35%
500 보조금	187,450,558	53.25 %	161,967,710	51.92 %	25,482,848	15.73%
510 국고보조금등	122,849,946	34.90 %	107,534,971	34.47 %	15,314,975	14.24%
520 시・도비보조금등	64,600,612	18.35 %	54,432,739	17.45 %	10,167,873	18.6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895,305	5.65 %	10,756,688	3.45 %	9,138,617	84.96%
710 보전수입등	19,310,463	5.49 %	10,200,000	3.27 %	9,110,463	89.32%
720 내부거래	584,842	0.17 %	556,688	0.18 %	28,154	5.06%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52,008,098	100.00 %	311,948,333	100.00 %	40,059,765	12.84 %
010 일반공공행정	18,643,747	5.30 %	15,349,211	4.92 %	3,294,536	21.46 %
020 공공질서및안전	1,953,472	0.55 %	1,565,883	0.50 %	387,589	24.75 %
050 교육	1,909,670	0.54 %	709,670	0.23 %	1,200,000	169.09 %
060 문화및관광	22,507,634	6.39 %	19,949,019	6.39 %	2,558,615	12.83 %
070 환경보호	11,496,336	3.27 %	11,178,421	3.58 %	317,915	2.84 %
080 사회복지	179,740,452	51.06 %	157,565,739	50.51 %	22,174,713	14.07 %
090 보건	9,381,852	2.67 %	8,115,785	2.60 %	1,266,067	15.60 %
100 농림해양수산	20,023,189	5.69 %	16,778,818	5.38 %	3,244,371	19.34 %
110 산업・중소기업	1,791,548	0.51 %	1,773,297	0.57 %	18,251	1.03 %
120 수송및교통	9,131,569	2.59 %	6,020,978	1.93 %	3,110,591	51.66 %
140 국토및지역개발	18,867,073	5.36 %	16,956,277	5.44 %	1,910,796	11.27 %
160 예비비	2,549,918	0.72 %	3,145,150	1.01 %	△595,232	△18.93 %
900 기타	54,011,638	15.34 %	52,840,085	16.94 %	1,171,553	2.2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87호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북구 중산동, 매곡동 일원
   ○ 면 적 : 407,094㎡

4. 시행자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조합장 이정창(변경 없음)

5. 시행기간 - 기정 : 2010. 10. 28. ~ 2019. 4. 27.

   - 변경 : 2010. 10. 28. ~ 2020. 4. 27.

6. 시행방식 : 환지방식(변경 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북구청 도시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생략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407,094	100.0	-	407,094	100.0	
주거용지	계	248,254	61.0	**감) 980**	**247,274**	60.7	
	단독주택용지	143,645	35.3	-	143,645	35.3	
	공동주택용지	76,658	18.8	**감) 980**	**75,678**	18.5	
	준 주 거 용 지	27,951	6.9	-	27,951	6.9	
도시기반시설용지	계	158,840	39.0	**증) 980**	**159,820**	39.3	
	학 교	11,847	2.9	-	11,847	2.9	초등학교
	주 차 장	4,070	1.0	-	4,070	1.0	노외주차장
	공 원	19,054	4.7	-	19,054	4.7	소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완 충 녹 지	22,525	5.5	-	22,525	5.5	
	공 공 공 지	1,892	0.5	-	1,892	0.5	
	하 천	3,056	0.8	-	3,056	0.8	약수천
	유 수 지	2,898	0.7	-	2,898	0.7	소공원내 중복결정 1,518㎡ 미포함
	도 로	93,498	22.9	**증) 980**	**94,478**	23.2	
	도 로	91,267	22.4	**증) 980**	**92,247**	22.7	
	보행자도로	2,231	0.5	-	2,231	0.5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변경)

■ 도로 총괄조서(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합 계	50	11,374 (8,678)	13	2,815 (2,071)	22	5,509 (5,474)	15	3,050 (1,133)
대로	3	2,297 (380)	-	-	-	-	3	2,297 (380)
중로	11	3,397 (2,618)	4	1,954 (1,210)	5	1,076 (1,041)	2	367
소로	36	5,680	9	861	17	4,433	10	386

주) ( )는 지구내 사업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1	25~30(3)	보조간선도로	1,180 (153)	대2-31	중2-154	일반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대로	3	42	25	보조간선도로	890	대2-18	대2-31	일반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대로	3	90	25	보조간선도로	227	대2-18	중1-311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1	71	20~23	집산도로	517 (25)	중1-312	대3-38	일반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중로	1	175	20	보조간선도로	252	대3-90	중3-215	일반도로		'10.6.30 울고112호	
기정	중로	1	311	20	보조간선도로	153	대3-90	중2-124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1	312	20~23	보조간선도로	1,032	대3-41	대3-90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변경	중로	1	312	20~23	보조간선도로	1,032	대3-41	대3-90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가감속차로 설치

주) ( )는 지구내 사업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4	15	집산도로	344 (309)	중1-311	41호공원 (중산공원)	일반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중로	2	126	15~20 (7.5~12.5)	집산도로	420	중1-71	대3-4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56	15	국지도로	63	중1-312	소2-14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2	457	15	집산도로	120	중1-312	소2-351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2	458	15	집산도로	129	중1-312	중3-34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3	346	12	집산도로	152	중2-124	중3-30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중로	3	347	12	집산도로	215	중2-457	중2-458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3	10	국지도로	245	중1-311	중1-312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변경	소로	1	73	10	국지도로	245	중1-311	중1-312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25	중1-312	소2-355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1	10	보행자전용도로	28	중3-347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2	10	보행자전용도로	40	소2-355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3	10	보행자전용도로	25	중1-312	소2-355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4	10	보행자전용도로	25	중1-312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5	10	국지도로	25	중1-71	소2-35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233	중1-312	중2-12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7	10	국지도로	215	소1-76	소2-35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46	8	국지도로	529	중2-124	소1-7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7	8	국지도로	273	소2-346	소3-44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8	8	국지도로	101	중3-346	소1-7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9	8	국지도로	86	소1-73	소2-34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0	8	국지도로	101	중3-347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1	8	국지도로	88	중3-347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2	8	국지도로	215	소2-351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3	8	국지도로	494	중3-347	소2-355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4	8	국지도로	442	소2-355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5	8	국지도로	585	소2-353	소2-354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6	8	국지도로	200	중2-126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7	8	국지도로	112	소2-360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8	8	국지도로	199	중2-126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9	8	국지도로	199	중2-126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0	8	국지도로	316	소2-356	소2-362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1	8	국지도로	201	중2-126	소2-362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2	8	국지도로	292	중2-126	소1-7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26	소1-73	소2-34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3	2~4	보행자전용도로	119	중1-312	소공원 87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4	4	보행자전용도로	40	소2-355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5	4	보행자전용도로	30	소2-354	소2-350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6	4	보행자전용도로	45	소2-352	소2-353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소로	3	보37	4	보행자전용도로	28	대3-41	소2-355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8	4	보행자전용도로	22	대3-41	소2-362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9	4	보행자전용도로	26	중1-71	소2-356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40	4	보행자전용도로	25	대3-41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41	4	보행자전용도로	25	대3-41	소2-362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주) ( )는 지구내 사업임0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12 호선	중로1-312 호선	종점명 변경	• 공동주택 부지 주택건설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가감속차로 설치
소로1-73 호선	소로1-73 호선	종점명 변경	• 도로용지(6㎡)에 반영되어야 하나, 공동주택용지(6㎡)에 잘못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 도로용지로 변경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3)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5)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6)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7)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8)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도로 총괄조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노선수 (개소)	연장 (m)
합 계	50	11,374 (8,678)	13	2,815 (2,071)	22	5,509 (5,474)	15	3,050 (1,133)
대로	3	2,297 (380)	-	-	-	-	3	2,297 (380)
중로	11	3,397 (2,618)	4	1,954 (1,210)	5	1,076 (1,041)	2	367
소로	36	5,680	9	861	17	4,433	10	386

주) ( )는 지구내 사업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1	25~30(3)	보조간선도로	1,180 (153)	대2-31	중2-154	일반도로		'00.3.4 울고33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2	25	보조 간선 도로	890	대2-18	대2-31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대로	3	90	25	보조 간선 도로	227	대2-18	중1-311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중로	1	71	20~23	집산 도로	517 (25)	중1-312	대3-38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중로	1	175	20	보조 간선 도로	252	대3-90	중3-215	일반 도로		'10.6.30 울고 112호	
기정	중로	1	311	20	보조 간선 도로	153	대3-90	중2-124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중로	1	312	20~23	보조 간선 도로	1,032	대3-41	대3-90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변경	중로	1	312	20~23	보조 간선 도로	1,032	대3-41	대3-90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가감속 차로 설치
기정	중로	2	124	15	집산 도로	344 (309)	중1-311	41호공원 (중산공원)	일반 도로		'00.3.4 울고33호	
기정	중로	2	126	15~20 (7.5~12.5)	집산 도로	420	중1-71	대3-4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56	15	국지 도로	63	중1-312	소2-14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중로	2	457	15	집산 도로	120	중1-312	소2-351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중로	2	458	15	집산 도로	129	중1-312	중3-347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중로	3	346	12	집산 도로	152	중2-124	중3-303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중로	3	347	12	집산 도로	215	중2-457	중2-458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기정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245	중1-311	중1-312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변경	소로	1	73	10	국지 도로	245	중1-311	중1-312	일반 도로		'10.10.28 울(북)고83호	선형 변경

주) ( )는 지구내 사업임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25	중1-312	소2-355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1	10	보행자전용도로	28	중3-347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2	10	보행자전용도로	40	소2-355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3	10	보행자전용도로	25	중1-312	소2-355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보4	10	보행자전용도로	25	중1-312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5	10	국지도로	25	중1-71	소2-35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233	중1-312	중2-12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1	77	10	국지도로	215	소1-76	소2-35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6	8	국지도로	529	중2-124	소1-7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7	8	국지도로	273	소2-346	소3-44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8	8	국지도로	101	중3-346	소1-7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49	8	국지도로	86	소1-73	소2-34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0	8	국지도로	101	중3-347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1	8	국지도로	88	중3-347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2	8	국지도로	215	소2-351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3	8	국지도로	494	중3-347	소2-355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54	8	국지도로	442	소2-355	소2-353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5	8	국지도로	585	소2-353	소2-354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6	8	국지도로	200	중2-126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7	8	국지도로	112	소2-360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8	8	국지도로	199	중2-126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59	8	국지도로	199	중2-126	소1-7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0	8	국지도로	316	소2-356	소2-362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1	8	국지도로	201	중2-126	소2-362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2	362	8	국지도로	292	중2-126	소1-76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26	소1-73	소2-347	일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3	2~4	보행자전용도로	119	중1-312	소공원 87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4	4	보행자전용도로	40	소2-355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5	4	보행자전용도로	30	소2-354	소2-350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6	4	보행자전용도로	45	소2-352	소2-353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7	4	보행자전용도로	28	대3-41	소2-355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8	4	보행자전용도로	22	대3-41	소2-362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39	4	보행자전용도로	26	중1-71	소2-356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보40	4	보행자전용도로	25	대3-41	소2-354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기정	소로	3	보41	4	보행자전용도로	25	대3-41	소2-362	특수도로		'10.10.28 울(북)고 83호	

주) ( )는 지구내 사업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312호선	중로1-312호선	종점명 변경	• 공동주택 부지 주택건설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가감속차로 설치
소로1-73호선	소로1-73호선	종점명 변경	• 도로용지(6㎡)에 반영되어야 하나, 공동주택용지(6㎡)에 잘못 편입된 면적에 대하여 도로용지로 변경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3) 공원 결정(변경)조서 - 생략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5)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6) 학교 결정(변경)조서 - 생략

7)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8)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9) 구역외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	75,678	-	-	75,678	
기정	B1	B1	25,867	-	북구 중산동 174-5일원	25,867	
변경	B1	B1	25,333	-	북구 중산동 174-5일원	**25,333**	
기정	B2	B2	50,791	-	북구 중산동 12일원	50,791	
변경	B2	B2	50,345	-	북구 중산동 12일원	**50,345**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생략

4)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7. 매곡중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변경없음) - 생략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8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5로 65 외 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75	2019-05-02	자연부락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62B 1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6길 6	2019-05-02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62B 2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5길 4	2019-05-02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4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603-1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3길 80-11	2019-05-02	기존 자연마을인 차일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19-3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25길 31	2019-05-02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19-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5로 65	2019-05-02	호계·매곡지구 명칭 사용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2019. 4. 29.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학습휴가 명칭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휴가일수 확대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2항

○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9조)

○ **연가 당겨쓰기 사유 제한 폐지 및 사용가능 일수 세분화**(안 제20조제6항)

○ **학습휴가 명칭 변경 및 일수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

- 명칭 : 학습휴가 → **장기재직휴가**
- 일수 : (현행)30일 → **(개정)50일**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3) : (현행)5일 → **(개정)1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203,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6항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5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
<tr><td>제19조(연가일수) ① (생략)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일)</th></tr><tr><td>3월 이상 6월 미만</td><td>3</td></tr><tr><td>6월 이상 1년 미만</td><td>6</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9</td></tr><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2</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4</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tr><td>6년 이상</td><td>21</td></tr></table></td><td>제19조(연가일수) ① (생략)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일)</th></tr><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12</td></tr><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4</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5</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tr><td>6년 이상</td><td>21</td></tr></table></td></tr>
<tr><td>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td><td>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table><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일)</th></tr><tr><td>1년 미만</td><td>5</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6</td></tr><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7</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8</td></tr><tr><td>4년 이상</td><td>10</td></tr></table></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12월}$ x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④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삭제)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4. 구청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에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학습휴가를 우선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 6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따른----------. ② ----------제7조의7----------. 1 ~ 3 (현행과 같음) 4. ----------50일의 장기재직휴가----------.----------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5 ~ 6 (현행과 같음)
[별표3] 구분 | 대상 | 일수(일) 출산 | 배우자 | 5	[별표3] 구분 | 대상 | 일수(일) 출산 | 배우자 | 10

붙임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 4. 16.>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text{12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4. 16.>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개정 2019. 4. 16.>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 4. 16.>

⑦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2019. 4. 16.>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

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본조신설 2018. 12. 18.]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 7. 15.

[별표 1] <개정 2018. 12.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6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522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시행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변경 : (현행) 장애등급 → (변경) 장애정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2)241-7204, 팩스번호 : 052)241-72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 됨에 따라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조례 제4조 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19. 4. 25. 분석 요청

바. 입법예고 기간 : 2019. 5. 2. ~ 5. 22.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4조(지원범위)** ①---------- ---------- ---**장애정도**----------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이혜인(241-72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1)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안 제31조)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39조)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근거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대부료의 감면),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수의매각)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12,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을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으로 한다. 같은 항 제4호 다음 각 목은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부재산관리”를 “공유재산관리”로 하고, 제2항 중 “모든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모든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31조 부분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공유재산** ----------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 ~ 4.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삭 제>
나. 일반시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삭 제>
다.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 ----------**공유**----------.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 - **사항**---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 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③ ---------- ----------**사항**을--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신 설>	6.「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27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16,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3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1. ~ 2. (생 략)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4. ~ 5. (생 략)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4.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7.1.]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3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감정평가 의뢰 대상(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확대 (안제18조제2항)

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2제2항)

3. 근거법규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나.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312, 팩스 : 052)241-7209】

5. 기타사항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을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하고, 제2조 제2항 제1호 중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을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구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을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을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7호 중 “1호부터”을 “제1호부터”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 ②(생 략)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 ②(현행과 같음)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3. 구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4. ~ 5.(생 략)	4. ~ 5.(현행과 같음)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7. 1호부터---------- ----------	7. 제1호부터----------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18조(가격평정) ①(생 략)	제18조(가격평정)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	② ---------- ---------- **감정평가업자** ---------- ---------- ---------- ---.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8.1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수정(안 제1조)

-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제5조(운영자문)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삭제

다. 공연장 규모 수정(안 제12조 별표2)

- 공연장 “482석”을 공연장 “453석” 으로 함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 출 처

- 주소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북구문화예술회관
- 전화번호 : 052)241-7351, 팩스번호 : 052)241-735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자문)”을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5조 중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를 “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라고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문화정책위원회”이라 한다)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45,000	
		오후	6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	1회	20,000	
야외공연장	224.51㎡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본 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기준이며, 추가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연습장		난방 20,000 냉방 20,000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4. 어린이 놀이방 이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생자녀	1인 1시간	500원
일반자녀	1인 1시간	1,000원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td><td>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td></tr>
<tr><td>제5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이하“문화정책위원회”이라 한다)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운영실적 등을 보고할 수 있다.</td><td>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td></tr>
<tr><td>【별표 1】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table><tr><th rowspan="2">시설구분</th><th rowspan="2">규 모</th><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2">사용료(원)</th></tr><tr><th>평일</th><th>토·일요일, 공휴일</th></tr><tr><td rowspan="4">공연장</td><td rowspan="4">482석</td><td>1일</td><td>220,000</td><td rowspan="4">30% 가산</td></tr><tr><td>오전</td><td>45,000</td></tr><tr><td>오후</td><td>65,000</td></tr><tr><td>야간</td><td>110,000</td></tr><tr><td rowspan="3">연습실</td><td rowspan="3">119.7㎡</td><td>오전</td><td>20,000</td><td rowspan="3">평일과 같음</td></tr><tr><td>오후</td><td>30,000</td></tr><tr><td>야간</td><td>50,000</td></tr><tr><td>전시실</td><td>168.9㎡</td><td>1일</td><td colspan="2">30,000</td></tr><tr><td>다목적교실</td><td>187.9㎡</td><td>1회</td><td colspan="2">30,000</td></tr><tr><td>문화교실</td><td>54.4~132.1㎡</td><td>1회</td><td colspan="2">20,000</td></tr><tr><td rowspan="3">야외공연장</td><td rowspan="3">224.51㎡</td><td>오전</td><td>20,000</td><td rowspan="3">평일과 같음</td></tr><tr><td>오후</td><td>30,000</td></tr><tr><td>야간</td><td>50,000</td></tr></table>※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td><td>【별표 1】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table><tr><th rowspan="2">시설구분</th><th rowspan="2">규 모</th><th rowspan="2">기 준</th><th colspan="2">사용료(원)</th></tr><tr><th>평일</th><th>토·일요일, 공휴일</th></tr><tr><td rowspan="4">공연장</td><td rowspan="4">453석</td><td>1일</td><td>220,000</td><td rowspan="4">30% 가산</td></tr><tr><td>오전</td><td>45,000</td></tr><tr><td>오후</td><td>65,000</td></tr><tr><td>야간</td><td>110,000</td></tr><tr><td rowspan="3">연습실</td><td rowspan="3">119.7㎡</td><td>오전</td><td>20,000</td><td rowspan="3">평일과 같음</td></tr><tr><td>오후</td><td>30,000</td></tr><tr><td>야간</td><td>50,000</td></tr><tr><td>전시실</td><td>168.9㎡</td><td>1일</td><td colspan="2">30,000</td></tr><tr><td>다목적교실</td><td>187.9㎡</td><td>1회</td><td colspan="2">30,000</td></tr><tr><td>문화교실</td><td>54.4~132.1㎡</td><td>1회</td><td colspan="2">20,000</td></tr><tr><td rowspan="3">야외공연장</td><td rowspan="3">224.51㎡</td><td>오전</td><td>20,000</td><td rowspan="3">평일과 같음</td></tr><tr><td>오후</td><td>30,000</td></tr><tr><td>야간</td><td>50,000</td></tr></table>※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td></tr>
<tr><td>1. ~ 4. (생 략)</td><td>1. ~ 4. (현행과 같음)</td></tr>
</table>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545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4조)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추가(안 제18조)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안 제19조, 제20조)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1)

3. 관계법령 : 「경관법」 제8조, 제28조, 제29조~제31조
「경관법 시행령」 제2조, 제25조~제2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시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도시과
- 전화번호 : 052)241-7922, 팩스번호 : 052)241-79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8조제1호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9조제3항제2호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9조제5항 중 “별표 2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를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를 “옥외광고 · 조명 · 범죄예방 등 관련분야에”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 ---------- ---------- 1. ---------- ----------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건축물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신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생략)	제19조(경관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1. ----------
2. 별표 1의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별표 2----------
3. ~ 4.(생 략)	3. ~ 4.(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2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협의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 2. ---------- 3. ---------- ---------- ·조명 · 범죄예방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1 (신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현 행	개 정 안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1]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자치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로시설물 분류 /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별표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 시설물 종류 산업로 /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 2] 경관 협의대상 시설물(제19조제4항 관련) 분류 /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 시설물 종류 공공건축물 /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

현 행		개 정 안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행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 도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기성품, 현상공모(설계경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당선작은 자문대상에서 제외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건 축 물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현 행	개 정 안
	<table><tr><td></td><td>가로화분대</td></tr><tr><td>보호시설물</td><td>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td></tr><tr><td>조명시설물</td><td>가로등/보안등, 보행등</td></tr><tr><td>교통시설물</td><td>신호등</td></tr><tr><td>정보시설물</td><td>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공공게시판, 주차안내/요금표지/관리소</td></tr><tr><td>관리시설물</td><td>배전함, 맨홀</td></tr><tr><td>기타시설물</td><td>단위면적이 150㎡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td></tr></table>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호
심의 년월일	2019. . .

심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신 설 규 제 안

제 출 자	도시과장
제출년월일	2019. 05.

규 제 심 사 요 청 서

<table>
<tr><td rowspan="2">규 제
사 무 명</td><td rowspan="2">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td><td>규제근거</td><td>경관법 제28조제1항
(건축물의 경관 심의)</td></tr>
<tr><td>법령근거</td><td>경관법 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td></tr>
<tr><td>규제구분</td><td>규제 신설</td><td>소관부서</td><td>도시과</td></tr>
<tr><td>규제목적</td><td colspan="3">○ 경관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는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심의 대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음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경관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품격있는 경관을 창출하고자 함.</td></tr>
<tr><td>심사내용</td><td colspan="3">○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보전 · 관리해야 할 자연 및 장소의 대표성, 장소개선 효과의 파급력, 개선이 시급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구역을 설정하였고 구역 내 용도지역, 건축물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심의 대상 규모를 지정하였음.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table>
<tr><th>관리구역</th><th>경관심의대상(건축물 층수)</th></tr>
<tr><td>산업로</td><td>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r><td>호계로</td><td>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r><td>강동해안</td><td>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r><td>매곡천</td><td>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able>
○ 건축물의 심의 기준
-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5호)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내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활용
- 신축하는 개별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검토</td></tr>
<tr><td>비 고</td><td colspan="3">○ 경관조례 개정안 제19조 제4항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외 대상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td></tr>
</table>

붙임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규제 심사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신설 규제안)

1. 제안이유

○ 경관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산업로, 호계로, 강동해안, 매곡천 일원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구역별 건축물 규모를 설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자 함.

2. 규제법규 및 내용

가. 규 제 법 규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나. 규제심사수 : 1건(신설)

다. 규 제 내 용

<table>
<tr><th>연번</th><th>구분</th><th>규 제 내 용</th><th>사 유</th></tr>
<tr><td>1</td><td>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심의</td><td>-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table>
<tr><th>관리구역</th><th>경관심의대상(건축물 층수)</th></tr>
<tr><td>산업로</td><td>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r><td>호계로</td><td>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r><td>강동해안</td><td>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r><td>매곡천</td><td>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
</table></td><td>- 울산 북구의 도시비전 및 경관 미래상 구현을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 입지하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관 심의를 통해 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함.</td></tr>
</table>

3. 참고사항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

- 정　의 :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법」 제9조에 의한 법정 계획인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경관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지구'와 같이 행위제한, 건축물의 높이 등 강제성이 강한 규제 조치는 취할 수 없으며,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에 경관심의를 통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 될 수 있도록 권장 · 유도 할 수 있음.

○ 2018 울산 북구 경관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

- 용역범위 : 북구 전역(A=157.32㎢)
- 용역기간 : 2016. 11. 25. ~ 2018. 12. 6.
- 주요내용 :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등
- 추진상황
  - 2017.　2. : 착수보고
  - 2017.　7. : 경관위원회 자문 (1차)
  - 2017. 11. : 중간보고
  - 2017. 12. : 경관위원회 자문 (2차)
  - 2018.　3. : 건축사 자문
  - 2018.　5. : 경관위원회 자문 (3차)
  - 2018. 10. : 공청회
  - 2018. 10. : 의회 의견 청취
  - 2018. 11. : 시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18. 12. : 경관계획수립 완료

○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예시 : 붙임

(1) 산업로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물 가이드라인

구 분		구 분
건축물	배치	● 심의대상 · 폭 15m이상 도로변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축물 (산업로는 도로에 접한 완충녹지 주변 건물까지 포함), 그 외 지역은 6층 이상 신축건축물
		· 건축물 전면은 도로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선 범위 내에서 동일한 선상의 건축 배치 형성 · 공개공지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도로와 연속성 있는 경관형성 유도 (산업로에 접한 건축물은 제외) · 주차장 설치는 건축물 전면 및 측면 배치는 지양하고 후면 배치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분절되지 않도록 차폐시설(조경 권장) 설치 고려 · 대형 건축물은 과도한 차폐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특히 건축물의 장변이 도로면과 접하지 않도록 권장
		 건축선의 유지 및 공개공지의 연속성을 배려한 건축물 배치
	형태	· 건축물의 개성은 유지하되, 과도한 형태로 인한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동일한 가로에 접한 건축물간의 유사성을 고려 · 건축물의 유사성은 선행 심의 대상 시설물을 반영하며, 없는 경우 해당 가로구간의 성향을 파악하여 선도적 디자인을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형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 (단,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 되거나 가건물인 경우는 제외) · 기하학적인 도형의 형태, 1차원적인 대상물 형상 등 향후 건축물 간의 조화가 불가한 외형의 디자인은 지양 · 대지 내 20대 이상의 지상 주차장 조성 시 도로변에 폭 1m이상의 식수대 설치 유도 · 또한 곡각부에 위치한 건축물은 주출입문을 곡각부에 위치 권장 · 동천강변을 접한 건축물은 하천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옥외작업장의 차폐는 식재 사용을 권장 · 옥외광고물은 층간 면적의 70% 미만, 3색 이하 색채 사용, 2층 이상은 바탕면 설치 불가, 상호명 / 업종 / 연락처 외 별도의 홍보문구 삽입 지양
		 건축경관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과도하고 독립적인 형태의 건축물 조성 지양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구 분</th></tr>
<tr><td rowspan="6">건축물</td><td rowspan="2">높이</td><td>·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돌출되지 않고, 시야의 개방감을 저해하는 구조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 동천강에서 동대산의 조망 시점을 분석하여 산림스카이라인과 조화되도록 조성</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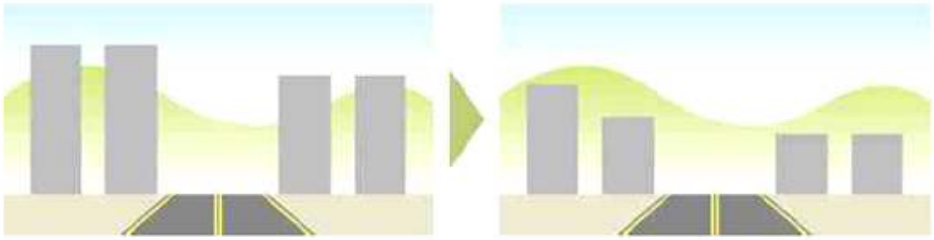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주변 산림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td></tr>
<tr><td rowspan="2">재질</td><td>· 4가지 이하의 외장재 사용 권장
· 변형 및 변질이 심한 내구성이 떨어지는 외장재 (저급한 재질, 가설 건축물 등) 사용 지양
·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 유행하는 재질을 이용하여 개성을 퇴색시키고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시키는 무분별한 재질 지양</td></tr>
<tr><td>
조화로운 색채를 고려한 재질의 선정
주재료 외에 다른 재질은 포인트 요소로 활용</td></tr>
<tr><td rowspan="2">외부공간</td><td>· 공개공지 활용 시 접하는 도로의 바닥과 조화 고려 (시설물, 바닥패턴 등)
· 건축물 전면 조경은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을 고려하고, 공개공지의 녹화 및 옥상 정원 조성 권장
·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 에어컨실외기, 도시가스 배관은 옥상 및 측면 설치 권장</td></tr>
<tr><td>
공개공지와 가로 수종의 통합
옥상정원을 이용한 휴게공간</td></tr>
</table>

산업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검토사항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공통사항		• 관련법규 및 조례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 적정 확인 •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정 확인			
건축물	배치	• 연접하고 있는 건축물과 건축선을 일치시켜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 • 조경공간 또는 주차장 등 공지 발생시 이웃 공지와 집중되게 배치 • 건물의 주차장 조성시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형태	• 과도한 형태로 인한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형태 지양 • ★동일 가로내에 위치한 건축물과의 조화 고려 • 동천강변에 접한 건축물의 면은 하천경관과 조화 고려 • 동천가에서 건축물 조망시 미관저해 요소는 차폐시설 설치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높이	• 과도하게 돌출되는 높이 지양 • 시야의 개방감을 저해하는 과도한 형태의 구조물 설치 지양 • ★동천강에서 무룡산 방향의 경관시점 검토하여 산림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재질	• 외장재는 4가지 이하 사용 권장 • 2가지 이상의 재료 사용시 건축물 형태의 과도한 분절 지양 • 천편일률적이고 무분별한 형태 및 재질 사용 지양 • 고유한 색상을 가진 재질(자연재료)의 경우도 건축물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			
	외부공간	• ★전면 공지를 공개공지로 활용할 경우 전면 보도와의 연속성 고려 • ★전면 녹지의 수종은 주변 가로 및 녹지와 동일 수종 또는 조화로운 녹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려 •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정원 조성 적극검토 • 친환경 에너지시설 도입을 고려하고 설치시 옥상에 설치 권장 • 에어컨실외기, 도시가스 배관 등 전면 노출 지양 • 부지 내 주차장 조성시 투수성 포장 권장 • Ⓒ건물 근처에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 자연감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공공영역(도로)		• 상징조형물, 가로등, 녹지, 교통관련시설 외 별도의 시설물 설치 지양(휴게 및 편의시설은 인근 공원 또는 공개공지의 시설 이용 유도) • 교통안내 · 표지시설물 등은 가급적 통합하여 설치하고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는 최적화된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 • ★방음벽은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재질/색채/녹화 등을 계획			
공공영역(공원)		• Ⓒ주변 건축물과 가로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물 배치 • 바닥패턴은 단순화하고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 • 공원 내 바닥 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 사용을 권장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주요 통행 동선에 고정시설물 배치나 단차 발생 지양			
공공영역(수변)		• 명촌천과 산업로 경계에 식재가 필요할 경우 산업로 수종을 따라 우선 선정할 것을 권장 • 수변과 연결된 공공공간 또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와 동선 연결 권장 •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권장			
공공영역(공공시설물)		• ★동일한 가로축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통일성 유지 • 절제되고 단순하며 간결한 형태의 시설물 설치 • ★내구성이 높은 재질 사용 • 저채도, 저명도 색상 사용 권장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북구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준용			
옥외광고물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를 것			
색채		• 본 경관계획의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야간조명		• 본 경관계획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 경관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 내용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 Ⓤ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 :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4. 관련법규

○ 「경관법」 제8조, 제28조, 제29조~제31조

○ 「경관법 시행령」 제2조, 제25조~제26조

5. 자체심사결과

○ 원안가결 : (○)　○ 심의보류 : (　)　○ 수정심의 : (　)

6. 붙임자료

○ 규제영향분석서 1부

○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타 지자체 규정 현황

○ 관련 법규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1. 규제 사무명</td><td>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경관 심의</td><td colspan="6">2. 구 분</td></tr>
<tr><td></td><td></td><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존속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7">안전건설국 도시과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경관담당 강지희, 담당자 이경미</td></tr>
<tr><td>4. 근거규정</td><td colspan="3">「경관법」 제28조</td><td colspan="2">관 련 규제수</td><td colspan="2">1</td></tr>
<tr><td>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td><td colspan="7">□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 분석방법
○ 규제의 연간 비용 : 해당없음
○ 피 규제자 수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신축 건물의 건축주
○ 경쟁 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 타 시·구·군에 비해 과다 또는 불합리한 규제 : 해당없음</td></tr>
<tr><td>6. 신설 규제의 내용</td><td colspan="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
<table><tr><th>관리구역</th><th>경관심의대상(건축물 층수)</th></tr><tr><td>산업로</td><td>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tr><td>호계로</td><td>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tr><td>강동해안</td><td>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tr><td>매곡천</td><td>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td></tr></table>
□ 경관조례 개정안 제19조 제4항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외 대상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북구의 상징가로, 원도심, 해안 및 수변 등 대표적 경관자원이 있는 곳으로 경관관리의 중요성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입지한 개별 건축물들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②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개별로 입지하는 신축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③ 규제의 목표 설정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①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 심의 대상 건축물이 신규 지정되었고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민원의 발생 여지는 있음.

② 기술수준 및 기타 행정 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해당사업의 담당부서 및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관 심의 이전에 사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음

○ 건축·도시·조경·토목·환경·디자인 등 전문성을 확보한 경관위원회로 구성하고, 심의 의견을 권장 및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운영 한다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①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신설규제로 대체 가능성이 없음

②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달성 어려움.

③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④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지역 여건 변화 또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정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확대 가능성은 있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경관 심의를 받기 위한 심의도서 작성 비용이 필요

②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동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①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 없음

②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① 규제 기준·절차의 명확성

○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정 기준 작성

②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경관법」 제28조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①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판단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①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25호)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내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
- 자유롭게 작성된 심의도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제출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개최일 기준으로 3일 이내 통보할 계획
-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사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②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경관법 및 경관 조례, 각종 위원회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운영

Ⅲ. 기타사항 :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4장 경관협정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사업을 말한다.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1의 경관 자문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⑤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경관협의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 · 도시 · 조경 · 토목 · 교통 · 문화 · 농림 · 디자인 · 옥외광고 · 조명 · 범죄예방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

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 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중 “경관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를 삭제한다.

- 타 지자체 규정 현황 -

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 대상 건축물
울 산 광역시	남구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은 경관디자인 심의 대상임
	동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도로변 6층 이상 신축 민간 건축물
	울주군	- 4층 이상 건축물 -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4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부 산 광역시	강서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중 5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택 -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정면과 측면 및 배면의 입면면적과 옥상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경남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중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주택 -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9구역 제외)」과 「국가보존묘지1호 인접 취락지구(봉하지구)」은 2층 이상 또는 8m 이상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설계지침 필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창원시	- 용호동 가로수길 : 외동반림도 248번길, 용지로 239번길, 용호로에 접한 건축물 - 상남상업지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 - 마산야구장 주변 : 중계카메라 노출 구간 5층이상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 - 장어거리 : 3층 이상 건축물 - 해양신도시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물 - 무학산 구릉지 :해안선~3/15대로변 6층 이상, 3/15대로~고운로변 8층 이상, 고운로~무학로변 3층 이상 - 진해원도심 : 중원로~백구로40변 모든건축물, 그 외지역은 7층 이상 건축물 - 여좌천주변 : 3층 이상 건축물 - 귀산동 용호마을 : 삼귀로변 2층 이상 건축물 - 명동마을 : 3층 이상 건축물

관련 법규

□『경관법』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3호 ~ 제4호 (생략)

② ~ ⑤ (생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제6호 (생략)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경관법 시행령』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제1호 ~ 제2호 (생략)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④ (생략)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⑥ (생략)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546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금연공원 지정
2.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3. 지정취지 :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금연구역 지정
   ○ 지 정 일 : 2019. 7. 1.
   ○ 지정대상 : 43개소(붙임 참조)

총 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기타공원	
43	31	6	1	4	1

※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됨.

○ 지정범위 : 공원 면적 전체

○ 계도기간 : 2019. 7. 1. ~ 9. 30.(3개월 간)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19. 10. 1.부터(과태료 2만원)

6. 예고기간 : 2019. 5. 2. ~ 5. 22.(20일간)

7.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금연지도)

◦ 전 화 : 052)241-8302

◦ F A X : 052)241-810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 견 서

사 업 명	금연공원 지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및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금연구역 지정 현황]

○ 금연공원 : 43개소

연번	구 분	공 원 명	소 재 지	면적(㎡)
1	어린이공원	291공원(햇빛공원)	중산동 1284-7	1,511.3
2	어린이공원	292공원(별빛공원)	중산동 1285-7	1,509.5
3	어린이공원	293공원(달빛공원)	중산동 1286-7	1,503.1
4	어린이공원	중산어린이공원	중산동 569	5,443.0
5	어린이공원	매곡제1어린이공원	매곡동 848	1,500.0
6	어린이공원	신천어린이공원	신천동 114-5	2,077.5
7	어린이공원	상안어린이공원	상안동 353	4,795.0
8	어린이공원	우리공원(호계제1어린이공원)	호계동 263-2	2,066.0
9	어린이공원	희망공원(호계제2어린이공원)	호계동 262-1	1,941.0
10	어린이공원	해맑은공원(호계제3어린이공원)	호계동 265-8	2,140.0
11	어린이공원	으뜸공원(호계제4어린이공원)	호계동 284-5	1,840.0
12	어린이공원	오뚜기공원(호계제5어린이공원)	호계동 256	1,551.0
13	어린이공원	종달새공원(호계제6어린이공원)	호계동 276-4	2,041.0
14	어린이공원	수동공원(호계제7어린이공원)	호계동 669	1,500.0
15	어린이공원	삼밭골공원(꽃무릇놀이터)	호계동 901	1,818.1
16	어린이공원	장등공원(교통놀이터)	호계동 997	2,451.0
17	어린이공원	산방등대공원(바다놀이터)	호계동 1013-1	1,501.4
18	어린이공원	당수골공원(구름놀이터)	호계동 1041-1	1,500.0
19	어린이공원	봇골공원(숲속놀이터)	호계동 1028-1	1,500.2
20	어린이공원	누리공원	화봉동 1457-3	6,248.9
21	어린이공원	가온어린이공원	화봉동 1471-1	1,506.6
22	어린이공원	아람어린이공원	화봉동 1338-2	1,632.4
23	어린이공원	아라어린이공원	화봉동 1339-3	1,509.4
24	어린이공원	통새미공원(화봉제1어린이공원)	화봉동 649	1,554.7
25	어린이공원	송내공원(화봉제2어린이공원)	화봉동 424-1	4,218.3
26	어린이공원	청솔공원(화봉제3어린이공원)	화봉동 468-1	1,539.4
27	어린이공원	두부곡공원(화봉제4어린이공원)	연암동 404-2	1,634.6
28	어린이공원	잠실공원(화봉제5어린이공원)	연암동 292	2,513.9
29	어린이공원	늘푸른공원(화봉제6어린이공원)	연암동 379-5	2,063.3
30	어린이공원	안산공원(화봉제7어린이공원)	연암동 311	1,569.4
31	어린이공원	성내어린이공원	염포동 995-11	1,758.0
32	근린공원	온누리공원	매곡동 330-2	20,223.4
33	근린공원	한솔근린공원	화봉동 1469-1	10,258.1
34	근린공원	화봉공원(화봉제1근린공원)	송내1길 15	11,422.7
35	근린공원	상방공원(화봉제2근린공원)	두부곡1길 9	12,025.9
36	근린공원	가람근린공원	화봉동 1471-4	9,939.9
37	근린공원	명촌근린공원	명촌동 683	20,288.0
38	소공원	중리소공원(염포공원)	염포동 524-4	1,129.0
39	기타	중산도시숲공원	중산동 1166-44	253.0
40	기타	미도소공원	새장터5길 13	610.0
41	기타	양정숲속쉼터공원	양정1길 35-1	1,500.0
42	기타	오치골공원	양정동 776-21	7,839.0
43	주제(수변)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송정동 산14-1	272,00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548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효율적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안 제1~2조)
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3~6조)
다.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7조)
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안 제8조)
마. 투자유치 전문가, 단체, 법인 등 위탁근거(안 제9조)
바.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안 제10~11조)
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의 특별지원(안 제12조)
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13조)
자.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안 제14~17조)

3.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52-241-7717,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이전이나 신설·증설에 대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유치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2. 관내 기업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가·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구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활용) ① 구청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기업 지정) 구청장은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본사, 연구소(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를 구 관할구역내의 산업단지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투자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기업

제11조(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2.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3.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4.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개척비

제12조(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의 특별지원) 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는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른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됨에 따라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공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하는 단서 조항이 시행(2019.1.1.)됨에따라 해당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제6조4항1호)

▪ 현행 :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단서조항 신설(별표1)

▪ 현행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 변경 :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비고 4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 052)241-7963, 팩스 : 052)241-7969】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별표1] 비고 4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를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④ (생 략) 1. (생략) 가. ~ 다. (생략) 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별표1] 비고 4. (생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별표1] 비고 4 (현행과 같음)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 : 2019.7.1.] 제2조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비고 4.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 시간이 20분 이내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